【의안번호 제271호】

검 토 보 고 서

(울산광역시 울주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)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2. 23. 노미경 의원

: 2024. 2. 26. 나. 의안회부

다. 집행부 검토의견 회신: 2024. 2. 27. / 여성가족과(원안 동의)

라. 조례안 예고 : 2024. 2. 28. ~ 3. 4. / 의견없음

2. 제정 이유

-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안전과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함.
- 또한,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, 회복 후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,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사업 및 위탁에 관한 규정 (안 제5조, 제6조)
-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-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(안 제8조, 제9조)

4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- [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]
-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-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제3호
- [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]
- [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]

나. 집행부 검토의견: <u>원안 동의</u>

○ 상위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, 조례 제정은 적합하다고 사료됨 다. 조례안예고: 의견 없음

6. 검토의견

□ 조례제정 취지

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주군민의 안전과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임.

□ 조례제정안 내용 검토

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
- O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,
- O 안 제3조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

수립·시행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O 안 제4조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,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법인・단체 또는 기관에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O 안 제5조는

-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・운영 및 피해자 긴급보호지원, 심리・법률상담 및 치료 등 의료지원,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,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 안 제5조제3항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- O 안 제6조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.
- O 안 제7조는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음.
- O 안 제8조는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, 법률·사법기관, 의료기관,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O 안 제9조는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 규정함.

□ 종합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(2023.7.18.시행, 2023.1.17.제정)」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정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,
- 최근 스토킹이 폭행,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.

참고자료 관련 법령 발췌서
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의 예방·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·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· 운영
- 2. 스토킹 예방 · 방지를 위한 조사 · 연구 · 교육 및 홍보
- 3. 피해자를 보호 ·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· 운영
- 4.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
- 5. 피해자의 신체적 · 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 · 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
- 6.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
- 7. 스토킹의 예방 ·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·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- 8.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 · 지원 체계의 구축
- 9.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스토킹 예방교육 등)**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 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 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 호 등에 관한 법률 |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_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 - ③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,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·시행 등 필요 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④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스토킹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 -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교육에 필요한 자료 또 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.
 - ⑥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3조(스토킹 예방교육 등)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 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- 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·운영되 는 이에 준하는 학교
- 2.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 관단체로 고시한 기관·단체(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 로 보는 기관·단체는 제외한다)
-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- 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
- ③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경우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 및 「양성평등기본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과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.
-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스토킹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
- 2.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
- 3. 법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 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⑤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 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폭력 또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성희롱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 · 시행할 수 있다.